Ⅱ.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1. 개인정보의 개념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이 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음.

○ 국가나 조직은 그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거래에 있어서도 각 개인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관계를 형성 ·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타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19세기 후반부터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법익 개념하에 법적 간섭이 시작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처리를 규제하게 되었음.

○ 최근에는 컴퓨터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SNS 등의 혁명적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인류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법제도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임.

■ 여기서 개인정보법제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개인정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법제의 규제를 받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선진 제국에서의 개인정보 정의를

요약하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사전적(辭典的)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정보란 '개인'과 '정보'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로서 이 두 명사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그 단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 먼저, '정보(情報)'는 유럽과 미국에서 information, data, record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료, 데이터 또는 기록 등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1)]

○ 한편, '개인(個人)'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2)]'을 의미하는 명사이지만 "정보"라는 명사 앞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관한'이나 '사적(私的)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3)]

– 여기서 공적인 정보와 대립되는 개념인 "사적인"이라는 의미와 "개인에 관한"이라는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4)], 사적(私的)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개인에 관계된 또는 그런 것'으로서의 뜻을 가지므로 양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개인"은 '낱낱의 사람'으로서 그 개념상 법인과 단체 등을 제외한 자연인(自然人)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5)]

---

1)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정보"를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3) 유럽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라는 용어에는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사로운 등을 의미하는 personal, individual 또는 priv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4) 권건보(2005), pp.9~12.

5)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보험업법」 제2조·제208조 등)이나 '단체 또는 개인'(가사소송법 제8조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란 사전적 측면에서는 '낱낱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자료(데이터, 기록)'라고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개념은 법적 보호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광범위하므로 그 규제대상을 보다 구체화 ·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같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주체 또는 처리방법이 상이할 경우 보호의 범위도 상이해질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에도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하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 놓을 필요도 있음.

○ 그러나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개인정보법률들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먼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6]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함.

○ 유럽연합(EU)의 1995년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동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7] 제2조는 개인

고 있어, 법상으로도 "개인"이란 용어에는 법인과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6)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 September 1980, OECD, pt.1.cl.(1)(b).

7) EU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1995 L281/31.

정보를 “신체 · 정신 · 심리 · 경제 · 문화 · 사회적 특성 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함.

○ 미국의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은 정보라는 용어 대신 기록(reco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8]에 관한 정보나 이를 수집 또는 집합한 것으로서 교육정보, 재무거래, 병력 및 전과 또는 취업경력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명 또는 신분번호, 기호나 지문, 성문(聲紋) 또는 사진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신분의 식별을 위한 특기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를 “당해 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나 기타의 정보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개인에 대하여 표현된 의견이나 데이터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있는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회 비교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으로 정의함.

8) 동법은 개인(individual)을 “미합중국시민 또는 적법하게 영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전자서명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거의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며(〈표 Ⅱ-1〉 참조), 가장 최근에 제정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됨.

○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9)]

〈표 Ⅱ-1〉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상 개인정보의 정의

근거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9) 총무처(1994), p.31.

■ 이러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다시 분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개념적 요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

○ 둘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

○ 셋째,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

가.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만 해당되며,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가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관계된 정보라면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는 '관련성'과 '임의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짐.[10]

○ 먼저,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여야 함.

–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10) 행정안전부(2011), pp.7~8 참조

바이오정보 등)나 특정 개인의 과거 ·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교육상황, 재정상황, 진료 및 건강 상태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 및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바, 이를 임의성이라고 함.

–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신장, 체중, 나이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 평가 등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 평가와 같은 주관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국내 · 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법률들은 생존하는 자연인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음.

○ 다만, 사자(死者)의 정보가 생존하는 유족의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임.

■ 사자(死者)의 정보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임.[11]

11) 행정안전부(2011), p.7.

○ 즉, 사망자의 정보는 상속이 불가능하고 그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정하는 것임.

○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사자(死者)의 "비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12)]

– 이와 더불어 사자(死者)의 정보가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자의 명예훼손'의 죄(제308조[13)])를 구성할 수 있음.

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서도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정보의 자유나 알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게 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임.

○ 따라서 개인정보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식별성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란 협의(俠義)로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 바로 당해 개인을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또는

12)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13)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식별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학교 · 직장 · 단체 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학번, 사번 등), 기업의 고객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ID 등 고객관리정보, 결제정보, 재화 · 용역 공급을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이 이에 해당함.[14)]

■ 이에 더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곤란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 또는 간접식별정보)도 개인정보로 분류됨.

○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음.

– 예컨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파일이라도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어 생년월일 순으로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과 대조하여 쉽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15)]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는 어떤 사람이 식별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식별정보나 식별가능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는 '비식별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식별정보 또한 최근의 사회 ·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14) 행정안전부(2011), p.8.

15) 황인호(2001), p.73.

등의 발달로 인하여 식별가능정보로의 편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16]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준하는 보호의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2. 개인정보의 분류

■ 개인정보는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관리주체, 개인정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17]

○ 개인정보를 분류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형별로 법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그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구분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각종 행정법규의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정보인데 비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 · 관리되는 정보임.

---

16) 전통적으로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정보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AOL은 2006. 8. 3. 온라인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65만 명의 AOL 검색엔진 이용자들의 2천 만 건의 검색 기록을 온라인상에 공개했음. AOL은 그와 같은 검색기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했으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각 이용자에게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여 공개하였음. 하지만, 4417749라는 번호가 붙여진 이용자가 Georgia주 Lilburn에 거주하는 62세의 미망인인 Thelma Arnold라는 사실이 밝혀졌음("A Face Is Exposed for AOL Searcher No. 4417749", 2006. 8. 9; 장주봉(2012), pp.51~52.에서 재인용).

17) 권건보(2001, pp.19~20), 김성태(2007, pp.23~40), 김연수(2001, pp.34~35), 황인호(2001, pp.77~81) 참조

○ 공공행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반면, 민간을 규율하는 법 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름.

■ 개인정보는 그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그 식별성을 기준으로 직접식별 개인정보와 간접식별 개인정보, 그 보호 정도를 기준으로 절대적 개인정보와 상대적 개인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정보 자체에 의해 특정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이며, 간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를 말함.

○ 절대적 개인정보는 그 공개를 절대적으로 제한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DNA정보, 건강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를 말하며, 상대적 개인정보는 법령이나 계약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 공개나 사용이 가능한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의 내용적 분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표 Ⅱ-2〉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동 분류는 Weible(1993)의 분류[18]에 기초하되,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몇 가지 개인정보유형(통신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을 추가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18) Weible, R.J.(1993), pp.166~168.

〈표 Ⅱ-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ipc.go.kr/)

3.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가.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 "보험개인정보"란 넓게는 앞에서 검토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문구상으로는 '보험정보 중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보험정보의 주체는 단체(법인 등을 포함)와 개인으로 구분되므로 단체가 정보주체가 아닌 대부분의 보험정보는 곧 보험개인정보에 해당됨.

– 보험정보는 계약자가 개인인 '개인계약 보험정보'와 계약자가 단체인 '단체계약 보험정보'로 구분 가능하며, 여기서 개인계약 보험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됨.

– 한편, 단체계약 보험정보 중에서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가 존재하는 바, 이 경우에는 단체계약 보험정보임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개인정보와 보험정보의 개념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정보의 개념이 중요해짐.

■ 보험업법상 보험의 정의에서 유추적용해 볼 때, 보험정보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이는 간략하게 보험거래정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보험거래정보는 다시 보험계약정보와 보험사고정보(보험금지급정보 포함)로 대별할 수 있음.

– 보험계약정보는 위험단체에의 가입내역으로서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험조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보험사고정보는 담보위험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내역으로서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고금액, 피해자,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수익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상기의 보험거래정보는 순수한 보험정보로서 협의(狹義)의 보험정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보험회사가 보험거래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종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보험고객정보(가망자 정보, 기존 구매자 정보, 우수고객 정보, 제휴업체 제공 고객정보 등), 할인·할증정보(교통법규 위반정보 등), 신용정보(보험계약대출 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인터넷 회원정보 등이 그 예임.

○ 이러한 정보들은 보험거래와 "관련된" 정보로서 순수한 보험정보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의 개념이 필요함.

○ 따라서 광의의 보험개인정보는 '보험거래 및 그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상품 관련 개인정보는 보험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타 업종의 금융투자상품과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집중·관리되고 있으므로 보험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나. 보험개인정보의 분류 및 수집 현황

■ 전술한 '개인정보의 분류'를 참고하여 보험개인정보를 분류한다면 먼저, 보험개인정보도 그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는 행정법규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상의 소관업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수집 · 이용하는 보험개인정보가 이에 해당함.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하여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험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 활용하는 신용집중기관인 보험협회가 수집 · 이용하는 보험개인정보를 의미함.

■ 보험개인정보는 또한 그 성격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일반 보험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식별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꼽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개인식별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의거 민감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며, 질병정보만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 · 이용할 수 있을 뿐임.

■ 보험개인정보의 내용상의 분류는 수집 방법상 또는 수집 목적상의 분류로 이해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분류하면 〈표 Ⅱ-3〉과 같이 보험거래 관련 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이 중 보험거래 관련 정보는 순수한 보험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거래에 부수된 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표 Ⅱ-3〉 보험개인정보의 내용상(수집목적상) 분류 및 수집항목

내용 구분	세부 내역	
보험거래 관련 정보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조회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보험대상자의 질병정보
		소득, 재산 등의 재정정보
	보험금 · 가불금 지급	보험금지급 및 관리 정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채권결손처분관리정보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보험거래 관련)	
	마케팅 정보(보험거래 관련)	
금융거래 관련 정보	전자금융거래 회원가입	
	대출계약 및 대출금 지급	대출계약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능력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금융투자상품 거래정보	개인식별정보
		투자상품 거래 관련 정보
		투자목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타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관련 정보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마케팅 정보	
	보험사 직원 관련 정보	